

특수 교육에 관한 설명서

교육국에서 학비를 대신 지불하는 사립 학교에 반 배정 받았을 때

아이를 사립 학교에 보내고 싶고 교육국에 수업료를 지불하게 하려면?

특수 교육 법에 따라, 장애 아이들은 “자유로운 그리고 알맞은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법원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이가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 하였다. 이는 사립 학교에 다니는것이 아이에게 더 이롭다는 이유만으로, 공공 비용을 사용해서라도 사립 학교에 다닐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국 (DOE)이 아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이는 공공 비용을 지불 받아서라도 사립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때때로 특수 교육 위원회 (CSE) 는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별 학습 프로그램 (IEP)에 따라 사립 학교에 배치할 것을 추천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CSE 는 IEP 첫 페이지에 “CBST에 맡긴다” 라고 적어 보낸다. (“CBST”는 중앙 지원 팀으로, 사립 특수 교육 학교에 아이들을 배치하는 것을 도와주는 중앙 교육국에 사무실이 있다.)

이와는 다른 경우에는, CSE에서 사립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허가 해 주지 않으며, 이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공청회에서, IEP에서 제안한 학교나, 학습 프로그램이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배정 받은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이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도, 공청회 담당관은 교육국(DOE)에게 아이를 위하여 사립 학교에 다니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청회 담당자는 그 대신CSE에게 다른 학교를 물색해 배정하라고 단순하게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청회 담당자가 아이에게 필요한 사립 학교나 특수한 사립 학교에 다니라고 결정 하기를 바란다면, 본인 스스로 아이가 교육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립 학교나 특수한 사립 학교에 다녀야만 한다고 공청회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확실한 경우, 아이가 일반 공립 학교에서 여러 종류의 특수 교육을 받았는 데도 그 어디에서도 발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때때로 아이 선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왜 아이가 사립 학교에 배정 받아야만 되는 이유를 공청회에서 진술하거나 또는 서면이나 리포트를 통해 설명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교육국 (DOE)이 추천한 프로그램이 적절치 않고 특수한 사립 학교나 사립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이 아이에게 적합하다는 평가서를 전문가로 부터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것을 진술한 평가서가 없다면 따로 개인이 작성한 평가서를 마련할 수 있다. 어떤 개인 건강 보험

회사에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평가서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불 하기도 하며, 평가서를 만드는 사람중에는 메이케이드도 받는다. 추가로, 만일 교육국에서 작성한 평가서에 동의하지 않은 다면 교육국(DOE)에서 지불한 비용으로 개인이 작성한 평가서를 마련 할 수가 있다.

만일 교육국에서 지불한 비용으로 개인이 작성한 평가서를 마련하려면, 교육국에서 지불한 비용으로 개인을 고용하여 아이에 대한 평가서를 마련하고 싶고, 평가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과 양식을 요구한다고 특수 교육 위원회(CSE)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양식을 받게 되면 본인이 고용한 사람과 양식을 작성하여 CSE 회장 앞으로 보내야 하며,그리고 나서 현재 평가서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받게 된다. 만일 본인이 개인을 고용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교육국이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신청하여 반드시 지불 하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교육국이 공청회에서 자기들의 평가서가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면, 개인을 고용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지불했던 비용을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개인이 작성하는 평가서를 어디에서 마련할지 모르는 경우, 아이의 담당 의사에게 물어봐 조언을 구하거나, 아이가 배정 받아 다니고 싶은 사립 학교에 물어 보거나, (212) 677-4650에 전화하여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기관(Resources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에 물어 보라.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개인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www.resourcesnycdatabase.org.

가능하다면, 평가서를 만드는 사람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평가서를 만들도록 해라:

- ❖ 교육적으로 발달하기 위해 아이에게 필요한 사항은 무엇 이며 그 이유는 (교실 크기, 프로그램 종류, 수업 방식, 환경 조건, 관리 감독 종류나 시간 등)
- ❖ 왜 교육국 (DOE)에서 배정한 학교가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나
- ❖ 교육국 (DOE)에서 배정한 학교는 현재까지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적어놓은 아이에관한 기록부를 이용하여 제시한 증거.

만일 아이에게 적합한 어느 특별한 사립 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학교를 방문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학교 당국에 이 학교가 내 아이에게 적합한지 물어보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여라. 그 학교에 자비를 지불해서 아이를 보낼 수 없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사립 학교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이러한 진행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이가 사립 학교에 가야 한다고 추천하고, 그리고 왜 사립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이에게 적합한지 그 이유를 설명한 평가서가 마련되면,특수 교육 위원회(CSE)를 만나 평가서를 보여주고 그 모임에서나 이후에 사립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요구 하여라. 만일 CSE가 사립 학교에 다니는

비용 지불을 거절한다면 공청회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이익을 위한 뉴욕 변호사 협회 (NYLPI)에 연락하거나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우리 사무실에 연락 한다면, 사무실에서는 아이에 관한 개별 학습 프로그램(IEP)과 최근의 평가서와 다른 자료들을 검토하고, 만일 아이가 공공 비용으로 사립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거나 무료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되면, 우리 사무실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 하여 공청회에 참석 시킬 것이다.

“NICKERSON 서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만일, 아이를 평가하는 것에 본인이 동의 하고, 타 학교 로 배정하기 위해 교육국 (DOE)에서 검토 하고 있다고 알려 준 후, 학교 수업일 65일 이내에 아이에게 알맞는 공립 학교를 배정 해주지 않으면, 특수 교육 위원회(CSE)는 어느 기간까지 공공 비용을 사용하여, 주정부에서 인가한 사립 학교에 아이를 등록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 하는 “Nickerson 서신” 또는 “P-1 서신”이라 부르는 양식을 보내 준다. “Nickerson 서신”과 함께 CSE는 주정부에서 인가한 사립 학교 목록을 함께 보내준다. 인터넷 www.nysed.gov에서도 그 목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학교들에 연락 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입학 할 수 있는 빈 자리가 있는지, 그 밖에 모든 자료들을 찾아 보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 #3를 참고 하여라.

“Nickerson 서신”이란 비 공립 학교 추천서와는 다른 개념이다 (1 페이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별 학습 프로그램 (IEP)팀이 “CBST에 맡긴다”라고 적은 것과는 다르다). 비 공립 학교 추천서와는 달리 “Nickerson 서신”은, 아이를 사립 학교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에서 만든 결정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국(DOE)이 정해진 시간과 절차에 따르지 않을 때 얻어 낼 수 있는 서신이다. 비 공립 학교 추천서와는 달리, “Nickerson 서신”은 어떤 일정 기간 내 원하는 사립 학교를 찾을 수 가 없다면 쓸모 없게 된다.

개별 학습 프로그램 (IEP) 팀에서 비 공립 학교를 허가 했고 “Nickerson 서신”을 받았지만 주 정부가 인가한 사립 학교 중에서 적합한 학교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만일 특수 교육 위원회(CSE)가 비 공립 학교를 추천하거나 “Nickerson 서신”을 보내 온다면, 주 정부에서 이런 목적으로 미리 인가한 사립 학교에만 다닐 수 있다는 허가를 받는다. 주 정부에서 이런 목적으로 미리 인가하지 않은 사립 학교에 다닐 때 교육국에게 수업료를 지불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본인이 직접 수업료를 지불하고 공청회를 통해 환불 받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를 “Carter” 혹은 “환불 금액” 공청회라 부른다. 두번째는, 좀더 어려운 경우로, 인가 받지 못한 학교를 설득하여 본인이 직접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본인이 공청회를 통해 교육국 (DOE) 이 수업료를 대신 지불하라는 명령이나 결정을 받아 오겠다는 약속을 이행 한다는 조건으로, 학교측에게 아이의 등록을 허가 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Connors” 혹은 “조건부 환불 금액” 공청회라 부른다. 공청회에서 (i) 교육국 (DOE)이 아이에게 적합한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 (ii) 선택한 비인가 사립 학교가 아이에게 적합하다, (iii) 수업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불한다고 사립 학교에 약속 했다, (iv)

본인 스스로 수업료를 지불 할 능력이 없거나 나중에 환불을 받으려고 한다는 4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부모는 개별 학습 프로그램(IEP) 팀에서 추천한 프로그램을 거절하고, 공공 비용을 사용하여 사립 학교에 아이를 등록 하려고 다니던 공립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않기 전, CSE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만일 부모가 이러한 결정을 사전에 CSE에 통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립 학교 수업료에 대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CSE 회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 이러한 결정을 미리 알리길 바란다.

“자유로운 교육 환경”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아이가 다니는 사립 학교의 수업료를 교육국 (DOE)에게 대신 지불하게끔 할 수 있는 아이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특수 교육법에 따라, 교육국(DOE)은 자유로운 교육 환경으로 누릴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아이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만일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학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은 한,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학교나 교실에 배정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일반 교실에서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특수 교사나 훈련된 조수로 부터 도움을 받는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별도로 장애 아이로 분리하여 만든 프로그램이나 그런 학교에 아이를 배정하기 전,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학습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학교가 장애 아이에게 필요한지 교육국에서는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별히 장애 아이들을 위한 사립 학교들이 많이 있다. 아이가 지원이나 도움을 받아 일반 교실에서 공부하고 장애 아이가 없는 일반 학교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했는데, 이것이 아이에게 알맞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교육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지 장애 아이들만을 위한 사립 학교에 다니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공립 학교에서 종합적으로 학습을 받으려고 좀더 노력하지 않았다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단지 장애 아이들만을 위한 사립 학교가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교육 장소라고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런 경우, 아이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그리고 그런 학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교육국 (DOE)에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사립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

어떻게 공청회 신청을 하나?

공청회 신청하기 위해,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131 Livingston Street, Room 201, Brooklyn, New York 11201, (718) 935-3280에 있는 공청회 사무실(, Impartial Hearing Office)에 양식을 요구해라. 필요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공청회 신청이 기각 될 수 있으므로, 공청회를 신청하기 위해 이러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청회 신청을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기재 하여야 한다:

- (i) 아이 이름, 특수 교육 위원회(CSE) 관련 번호, 주소와 학교
- (ii) 왜 공청회를 신청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공청회 담당자들이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와—관련 사항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 (iii) 공청회 담당자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의견.

공청회를 요구하는 신청서가 접수가 된 후, 교육국 (DOE)은 서로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지 상의하기 위하여 언제 회의를 열었으면 좋을까 본인에게 연락해야 한다. 만일 본인이 서로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고 직접 공청회를 신청 하겠다는 것에 교육국의 담당자가 동의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에서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 할때 이 문제는 나중에 공청회에 상정된다.

참 고

- 노트 북을 보관하여
 - 전화 통화 내역과 개인 면담 및 만남에 관한 기록을 할 것.
 - 교육국에서 받은 모든 서류를 보관할 것
 - 편지와 봉투를 보관할 것
 - 날짜가 찍혀 있지 않는 서류는, 서류나 봉투 뒷면에 받은 날짜를 기록할 것
- 모든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거나 개인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고, 수취인으로 하여금 그 서류의 복사본에 서명과 받은 날짜를 요구할 것
- 항상
 - 교육국에 보낸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보관할 것
 - 교육국 담당자의 이름을 알아두고
 - 가능하면, 직위, 사무실, 자세한 연락처를 알아내어
 - 다음에 필요 하므로 기록하여 남겨 둘 것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이 서류를 법률적인 설명서로 인정하지 않는다.